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,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

제정 2023. 4.27 조례 제2387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용인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,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용인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공공기관"이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용인시(이하 "시"라 한다)가 설립한 공사·공단(이하 "공사·공단"이라 한다) 및 「용인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(이하 "출자·출연 기관이라 한다)을 말한다.
- 2. "출연금"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용인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의 의결을 받아 출자·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.
- 3. "전출금"이란 시가 공사·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 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.
- 4. "위탁사업비"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,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.
- 5. "정산"이란 출연금,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(이하"출연금등"이라 한다)의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.
- 6. "반납"이란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(책무) 용인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

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,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

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4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등에 적용한다.
- 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출연금등 정산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6조(집행기준)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「지방 공기업법」제66조의2에 따른 예산·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「지방자치단 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.
- 제7조(정산보고 및 정산검사)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등의 지출내역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 - 1.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
 - 2. 출연금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
 - ② 시장은「지방공기업법」제66조제2항 및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를 완료한 후 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8조(반납처리 등)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출금과 위탁 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

- 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출연금은 정산보고서 제출로 갈음한다.
-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.
- 제9조(정산 매뉴얼 마련) ①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, 공공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인센티브 제공 등)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등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또는 「용인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는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때부터 적용한다.